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정준호 의원 외 29명
- 의안번호 : 제1021호
- 발의일자 : 2023년 8월 11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2. 제 안 이 유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육포기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피학대동물 등 동물보호 비용에 관한 소요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하여 정의 부분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사육포기 동물', '동물학대', '기질평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사육포기 동물 인수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 다. 동물 보호비용의 부담 및 소유자등의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라.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사육포기 동물 및 기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

####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관리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학대동물 등 동물보호 비용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요경비 징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정비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이하 “법”)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91년)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됐으며, 지난해 4월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전부개정되어 올해 4월 부터 시행<sup>1)</sup>되고 있음.
- 동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023년 3월 상위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sup>2)</sup>한 바 있으나, 미반영된 ‘사육포기 동물’ 등의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은 없음.
- 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인수를 신청한 동물에 대해 시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 [시행 2023. 4. 27.] [서울특별시조례 제8643호, 2023. 3. 27., 일부개정]

- 세부적으로 안 제18조(사육포기 동물 인수 등 관리)는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4조<sup>3)</sup>제4항과 법 시행규칙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제3항<sup>4)</sup>에서 규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준용하고 있음.

그 밖에 ‘소유자등이 수감으로 동물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sup>5)</sup>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동물 사육이 어려울 수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 3) 「동물보호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③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5)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 제19조(소요경비 등의 징수)제1항은 법 제42조<sup>6)</sup>제3항과 법 제44조 제3항<sup>7)</sup>에 따라 보호비용을 소유자들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sup>8)</sup>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대상으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임.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한 것은 다소

6)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sup>1)</sup>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sup>1)</sup>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동물보호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③ 시·도지사<sup>1)</sup>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8)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24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는 ‘사육포기 동물’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긴급보호동물’의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법 제20조제2항<sup>9)</sup> 및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에서 정한 ‘기질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법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기·유실 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에 동물 의료지원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9)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